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1. 30 선고 2021가단3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최용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지하, 김문범

피고1. B

2. C

3. D

4. E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2021. 11. 3.

판결 선고2021. 11. 30.

주 문

1. 피고들과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5. 3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2. F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7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9. 7. 16. 접수 제1046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F은 G은행에 대하여 1,377,110원, H은행에 대하여 2,580,807원, I은행에 대하여 14,168,172원, J카드에 대하여 7,337,723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K 주식회사가 G은행 등의 F에 대한 위 채권들을 양수한 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가 2003. 10. 24.경 K 주식회사의 F에 대한 위 채권들을 양수하였다.
- 2) 원고는 F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차전4093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4. "F은 원고에게 25,463,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F이 2016. 10. 20.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3) L이 2019. 1. 5.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F과 피고들은 2019. 5. 31. F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각 2/11 지분을 전부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피고 B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이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이 별지 목록 제7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이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9. 7. 16. 접수 제10464호로 피고들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9년 1월 5.일 경남 고성군 M, L(주민등록번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D, B, F, C, E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한다.

1.경남 고성군 N	답 826M ² 은 공동상속인 중 B의 소유로 한다
2.경남 고성군 O	대지 350M ² 은 공동상속인 중 B의 소유로 한다
3.경남 고성군 P	대지 172M ² 은 공동상속인 중 C의 소유로 한다
4.경남 고성군 Q	답 198M ² 은 공동상속인 중 C의 소유로 한다
5.경남 고성군 R	잡종지 158M ² 은 공동상속인 중 D의 소유로 한다
6.경남 고성군 S	임야 9,124M ² 은 공동상속인 중 D의 소유로 한다
7.경남 고성군 T	답 450M ² 은 공동상속인 중 D의 소유로 한다
8.경남 고성군 U	대지 43M ² 은 공동상속인 중 D의 소유로 한다
9.경남 고성군 V	답 1,200M ² 은 공동상속인 중 D의 소유로 한다
10.경남 고성군 W	답 2,185M ² 은 공동상속인 중 E의 소유로 한다
11.경남 고성군 X	전 945M ² 은 공동상속인 중 C의 소유로 한다
12.경남 고성군 Y	건물 대지 324M ² 은 공동상속인 중 D의 소유로 한다
13.경남 고성군 Y 공동상속인 D	건물 블록조 스텔지붕 단층주택 68.40M ² 은 의 소유로 한다
14.경남 고성군 R	건물 창고시설 시멘트블록조 74.8M ² 은 공동상속인 중 D의 소유로 한다

4)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F은 원고에 대한 채무 이외에 Z 유한회사에 대하여 12,452,302원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피고 D에 대하여 약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피고 B에 대하여 약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피고 C에 대하여 약 2,7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5)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F의 적극재산으로는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2/11 지분과 약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원고에게 25,463,8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F에 대한 위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2)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94다2978(병합) 판결 등).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F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F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인 피고들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채권과 피고들의 F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상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F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3) 위와 같이 채무자 F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피고들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들은 F의 구체적인 재산 상황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F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들의 F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F의 상속지분을 양수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일부 상계하기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들 주장과 같이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피고들이 매수하고 F의 매매대금채권과 피고들의 F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설령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F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7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9. 7. 16. 접수 제1046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진현섭

별지

1) 원고는 소장과 2021. 8.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청구취지에서 "피고들과 F 사이에 2019. 1. 5.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들과 F 사이에 2019. 5. 3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임이 인정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행한다.